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 제정 [] 개정 [0] 폐지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안준호 주소(거소·체류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전화번호: -2012)	생년월일
-------------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	--

이유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은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청구인 안준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①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② 주소는 도로명 주소 또는 법정동까지만 기재합니다.
 - ③ 전화번호는 끝 번호 네 자리만 기재합니다.

<별지>

왜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아주 나쁜 비교육적인 조례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1. 학교와 학생의 본질과 사명은 ‘학업에 대한 권리’이다. 그런데, 조례내용에 없다. 한마디로, **교육을 외면하는 조례**로 결국, 부모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2.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라는 것들이 비교육적인 것들**이다.

- 제6조(신체의 자유)는 교사의 심부름을 ‘신체의 자유 박탈’로 가르치는데, 이런 논리가 가정에 적용되면 부모의 심부름도 ‘신체의 자유 박탈’로 생각하고 대들지 않겠는가?

-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이단을 이단과 사이비라고 경계하는 것을 ‘종교 차별’이라고 금지하며, 부모의 신앙 교육을 ‘종교 강요 인권 침해’라며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나 반성문을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금지하는 비교육적 조례이다.

- 제11조(정보접근권)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핸드폰 소지로 무슨교육이 되겠는가?

-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 이단), 등을 권리화 한다.**’ ‘인종/민족/국가’등은 이슬람이나 중국의 문화를 학교에 강제하는 교육과 할랄 급식 등이 이뤄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임신 출산도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은 왜곡된 남녀관을 가르쳐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녀가 화합하게 살도록 한 **창조 섭리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공무원 대상 교육인데, 왜 성평등(젠더)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페미니스트 돈벌이에 학생들 교육비를 지출하려 하는가? 또,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편견’이라 규정하여 올바른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되려 학생권리침해라며 징계당할 수 있다.

- 제34조(학생인권센터)는 위와 같이 **비교육적인 행태를 금지하는 교사들을 고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올바른 훈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행태가 이미 제정된 교육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결국 학생과 부모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3. 비교육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이다.

-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항목은 정치권이 학생들을 집회에 데려다 쓰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 광주병 시위때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학생인권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다. **홍위병의 우려가 있다.**

-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복장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학생복장 규제 다 한다.

-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초중고생이 학업 외의 학교 운영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시의 학생 권리 목록에도 없는 것이다.

4.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은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담배 . 술 .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 임신 .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